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 8. 28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7. 9. 1

다. 상 정 일 자 : 제6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97. 9.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조치승 재무담당관)

가. 제안이유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여비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여비 종류를 일부 개정하여 업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여비의 종류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가족 이전비를 가족 여비로 개정하고 식탁료를 삭제
- 국내여비정액, 현장지도 여비, 이전비, 근무지내 출장의 현지 교통비 조항을 삭제하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 제2조 여비의 종류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가족 이전비를 가족여비로, 식탁료를 삭제하는 것은 국내여비 규정이 96. 12. 31 개정되어 그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이며
- 현행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제3조 국내여비정액, 제5조 현지지도여비, 제6조 이전비, 제7조 근무지내 출장의 교통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은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토록하여 조례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하고 여비지급에 있어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안 제4조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은 현행조례 제8조의 준용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법령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서 관련법령에 합당하고 시행에 따른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과의 혼선을 방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 시행토록 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락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의결